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4일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4월 2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및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(안 제3조제2항)
-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,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함(안 제11조제1항)
- 절차의 흐름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(안 제11조 및 제1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,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(안 제3조제2항)
- 나)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,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함(안 제11조제1항)
- 다) 절차의 흐름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(안 제11조 및 제13조)
- 라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

#### 3) 검토 의견

- 우리구의 특성(의원정수 10명)을 고려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인 대표자의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함은 물론, 의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의장의 겸직금지 범위에 내부 연구활동 겸직에 관한 명문상 금지규정은 없으나, 본 조례에서 의장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직무를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니므로 의장의 대표자 자격을 제한함이 타당함.
-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